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룡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로 한다.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문화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담당으로 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불금 상환 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은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이내에 6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면·동장의 확인과 계룡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원 부				납 입 통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제 호년도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의료 급여 기금		소관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 납 액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 납 액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 납 액	상 환 금 내 용	대불액	상환액	미 납 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입금 액		금 원		납입금 액		금 원		납입금 액		금 원		납입 금액		금 원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에 납부하 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개봉시장 (원)				개봉시장 (원)				○○○상 (원) 개봉시장 귀하				○○○상 (원) 분 입 수 입 원			

268mm×190mm(신문용지 50g / m²)

[별지 제2호서식]

(전 면)

우 편 엽 서

우 표

우편번호 :

귀 하

(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

제 호	년도	분기분
대 불 상 환 금	금	원

위 대불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 ○ ○ 에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
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인